

#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593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1.

제 출 자 : 파 주 시 장

## □ 제 정 이 유

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각기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목표에 따라 통합, 우리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City Identity Program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CIP사업지도위원회를 구성·운영코자 함.

## □ 주 요 골 자

가. 위원회의 CIP사업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함을 정함.  
(안제2조)

1. 과업의 기본 및 응용요소의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 및 지원
2. 개발된 CIP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의 적용·보급활동
3. 개발(안)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
4. 보고회·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의 종합검토 및 반영여부 조언

나. CIP사업지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제3조)

○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
○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. 파주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사항을 정함  
(안제8조)

##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우리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CIP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CIP사업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과업의 기본 및 응용요소의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적 조언 및 지원
2. 개발된 CIP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의 적용·보급활동
3. 개발(안)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
4. 보고회·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의 종합검토 및 반영여부 조언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

②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고,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시의원 2인 이내
- 2.관련 공무원
- 3.관련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다만, 시의원·공무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보고회·공청회등 CIP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자료의 제출) ① 각 위원은 개발(안)에 대한 다양한 창안사항을 심도있게 연구·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토론을 거쳐 시장에게 조언한다.

② 위원회에서는 필요할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조회,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관련기관에서는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7조(건의등의 처리) 시장은 건의·조언된 사항이 과업수행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

## 부 칙

①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②(유효기간)이 조례는 CIP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